

대구지방법원 2022. 4. 28 선고 2021가단13425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원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4. 28.

주 문

1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. 3. 22.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천종호

별지